

제8장 특명성

제8.1조 정의

이 장의 목적상,

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이란 그 범위에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모든 인과 사실 상황에 적용되고 행위규범을 형성하는 행정 판정 또는 해석을 말하나,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.

- 가.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,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행정 또는 준사법 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이나 판정, 또는
- 나. 특정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하여 내려진 판정

제8.2조 공표

1.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한 자국의 법, 규정, 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 판정이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.

2. 가능한 한도에서,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,

- 가. 자국이 채택을 제안하는 제1항에 언급된 조치를 사전에 공표한다. 그리고

- 나.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 그러한 제안된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.

제8.3조 정보의 제공

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,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요청 당사국이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기는 제8.2조에 언급된 실제 조치 또는 제안된 조치와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,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한다.

제8.4조 행정절차

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한 자국의 법, 규정, 절차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, 각 당사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,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이 조치를 적용하는 자국의 행정절차에서 다음을 보장한다.

- 가.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,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, 절차가 개시된 때 그 절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절차의 성격에 대한 기술, 절차가 개시되는 법적 권한에 대한 진술, 그리고 쟁점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포함한 합리적인 통지를 제공할 것
- 나. 시간, 절차의 성격, 그리고 공익이 허용할 때, 절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최종 행정처분 전에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실과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할 것, 그리고
- 다. 자국의 절차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를 것

제8.5조

재심사 및 불복청구

1.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,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신속한 재심사를 목적으로, 그리고 정당한 경우 그 정정을 목적으로, 사법, 준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나 절차를 수립하거나 유지한다. 그러한 재판소는 공평하고 행정 집행을 맡은 부서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사안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는다.
2. 각 당사국은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에서 그 절차의 당사자에게 다음의 권리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.
 - 가. 각자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, 그리고
 - 나. 증거와 기록된 제출자료, 또는 자국의 법과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, 행정 당국이 취합한 기록에 기초한 결정
3.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불복청구 또는 추가적인 재심사를 조건으로, 문제가 된 행정처분에 관련된 부서 또는 당국이 제2항나호에 언급된 모든 결정을 이행하고, 그러한 결정이 이들의 관행을 규율하도록 보장한다.

제8.6조

다른 장파의 관계

이 장의 규정과 다른 장의 투명성에 관한 규정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,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후자가 우선한다.